

1. 개정이유

양안동일·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경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일부 예외사항 규정 (안 제12조)

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‘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+3.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’은 제외하도록 정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
* 개정안/수정안/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

나.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
- 전자우편 : futureje@korea.kr
- 팩스 : 044-202-3925

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,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(전화 044-202-2458, 팩스 044-202-39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529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우경건설(주)(노윤근) ② (주)동성엔지니어링(김형철)
③ (주)동일기술공사(황주환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713-7070 ② 02-2041-8500 ③ 02-3400-5600

2. 명칭 : 코핑부와 I형강 거더를 강결 일체화한 거더 연속 교량 시공 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거더

<기술의 요지>

교각 기교각 기둥의 상단에 주형 높이로 설치되는 횡방향 역T형 코핑부와 코핑부의 양측단에 종방향으로 구축되는 I형강 거더를 교량받침 없이 PS 강봉, 상단 강판 및 전단연결재 만으로 강결 일체화시키는 거더교량 시공기술로써, 기존의 투박한 교각 코핑부를 빔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교각과 일체화함으로써 교량 높이를 낮추어 종단 경사를 완화하거나 교량 연장을 짧게 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. 또한 슬림한 코핑부로 인해 형하공간이 크게 확대되어 개방감과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. 따라서 교량의 계획고를 낮출 수 있어 계획고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으며, 교량받침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형식의 교량 시공기술이다

<범위>

교각 기둥의 상단에 주형 높이로 설치되는 횡방향의 역T형 코핑부와 코핑부의 양측단에 종방향으로 구축되는 I형강 거더를 교량받침 없이 PS 강봉, 상단 강판 및 전단연결재로 강결 일체화시키는 거더교량 시공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19-500호
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6280호, 2019.1.15. 공포, 2019.7.16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